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6가단31145 판결 [횡령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송오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유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20.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민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C에 입사하여 2008. 8. 1.경부터 2015. 4. 27. 퇴직할 때까지 인천, 부천시, 김포시 등에 있는 거래처에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7.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담당했던 거래처별 장부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0. 30.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사이에 266회에 걸쳐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합계 13,83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횡령금 13,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08. 7. 28.부터 2015. 4. 2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반품을 공제하고 합계 598,436,000원 상당의 제품을 출고 받은 반면,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은 합계 455,824,000원이고, 원고에게 반환한 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액은 합계 100,773,000원인바, 결국 피고는 위 출고금액에서 입금액 및 미수금액을 공제한 차액 41,839,000원(=598,436,000원-455,824,000원-100,773,0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거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분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횡령금 외에 추가로 28,009,000원(=41,839,000원-13,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거래처별 장부에 미수금으로 기재된 금액 중 20,092,000원은 실제로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급한 후 이미 그 대금을 수금한 것이어서 존재하지 아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0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또, 피고가 원고로부터 거래처 1곳을 방문할 때마다 관리수당으로 1,000원 및 거래처에 방문에 소요되는 유류비로 10km당 2,000원을 지급받아왔는데, 원고에게 합계 6,448회에 걸쳐 방문하지 않은 거래처를 방문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를 하고, 234개 거래처에 대여하는 실제 방문한 횟수가 13,519회임에도 26,850회로 부풀려 보고를 하여, 방문수당으로 합계 19,779,000원 $[(6,448+26,850-13,519)\text{회}\times 1,000\text{원}]$ 과 유류비로 합계 7,675,000원 등 총 합계 27,454,000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7,4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거래처 1곳을 방문할 때마다 관리수당으로 1,000원 및 거래처에 방문에 소요되는 유류비로 10km당 2,00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허위의 보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13,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효채